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38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서명옥

고동진 · 김소희 · 엄태영

송언석 • 권성동 • 윤한홍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으로 인하 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개방적 자금조달과 홍보효과 등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여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함.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성장에 한계

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 제117조의7제1 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제3항 단서·제4항 신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요건 이내에서 자신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함.
 - 3)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보유 중이거나 후속 경영자문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 대하여 새로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등 허용(안 제117조의7제11항, 제117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 간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금지(안 제117조의7제1 2항 신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사기, 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마. 연간 총 투자한도 확대(안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제2호나목)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 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함.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0조"를 "제40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7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청약금액이 모집예 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1.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증권 발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할 것
- 2.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의 잔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17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온라 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 이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 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는 새로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 2.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한 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 3.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영에 관한 자문 계약이 계속 중이거나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계속 중이거나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제117조의7제11항(종전의 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

- 이 신설한다.
 -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
 - 1의2. 제117조의9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회의 개최
 -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117조의10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을 확인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및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로 인한 가중처벌로 한정한다)에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11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를 "온라 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할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 3. 발행하려는 증권의 종류
- 4. 증권발행의 일반적인 조건
- 5. 증권발행의 예상 일정
- 6.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 7.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 권발행인은 투자자들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설명회의 장소, 참관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7조의10제4항 본문 중 "제117조의7제10항제3호"를 "제117조의7제1 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나목 중 "2천만원"을 "4천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7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7조의10제2항"을 "제 117조의9제1항·제2항에 따른 투자광고(투자광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 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제117조의10제2항"으로 한다.

제117조의13제2항 중 "제117조의7제9항"을 "제117조의7제10항"으로 한다.

제444조제11호의2 중 "제117조의7제6항"을 "제117조의7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의3을 제1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117조의7제1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한 자와 그 증권을 온라인소액투자중 개한 자

제445조제18호의4 중 "제117조의7제10항"을 "제117조의7제11항"으로 한다.

제446조제19호의5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제19호의6부터 제19호의 9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의6(종전의 제19호의5) 중 "제117조의7제4항"을 "제117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7(종전의 제19호의6) 중 "제117조의7제7항"을 "제117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의8(종전의 제19호의8(종전) 제19호의8(종전의 제19호의8(종전) 제19호의8(종전의 제19호의8(종전) 제19호의8(

호의7) 중 "제117조의9제2항"을 "제117조의9제3항"으로 한다.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제449조제1항제35호의3 중 "제117조의7제9항"을 "제117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의3 중 "제117조의7제8항"을 "제117조의7제8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38호의17부터 제138호의19까지를 각각 제138호의18부터 제 138호의20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38호의15를 제138호의17로 하며, 같은 표 제138호의9부터 제138호의14까지를 각각 제138호의10부터 제 138호의15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8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표 제138호의10(종전의 제138호의9) 중 "제117조의7제4항"을 "제11 7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8호의11(종전의 제138호의10) 중 "제117조의7제6항"을 "제117조의7제7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8호의 12(종전의 제138호의11) 중 "제117조의7제7항"을 "제117조의7제8항"으 로 하고. 같은 표 제138호의13(종전의 제138호의12) 중 "제117조의7제 8항"을 "제117조의7제9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8호의14(종전의 제1 38호의13) 중 "제117조의7제9항"을 "제117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8호의15(종전의 제138호의14) 중 "제117조의7제10항"을 "제117 조의7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38호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38의9.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138의16. 제117조의7제1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7 제12항 및 제444조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② (생략) ~ 26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 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 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 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 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 하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1항에 따른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29 (생 략)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① 제40조(「중소기업기본법」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 지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 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 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 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u>외한다)</u>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자신이 온라인소
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
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u>1. 제117</u> 조의10제3항에 따른 증
권 발행의 취소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
권의 잔고 합계액이 자기자본
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 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 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u><신 설></u>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3
<u>다만, 온라인소액투</u>
자중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 이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는 새로운 온라인소액투
자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
산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증

④ ~ ⑨ (생 략)

-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 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 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	------------

- 2.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 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 라인소액증권발행인
- 3.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영에 관한 자문 계약이 계속 중이거나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이 계속 중이거나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 <u>⑤</u> ~ <u>⑩</u> (현행 제4항부터 제9항 까지와 같음)

<u> </u>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 자광고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신 설>

2. ~ 4. (생략) <신 설>

- 1의2. 제117조의9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회의 개최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117 조의10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을 확인하여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제 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를 말한다) 및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증권의 모집 또는 사 모에 관한 중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형법」 제347조, 제347조 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3조(「형 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 355조 및 제356조의 죄로 인 한 가중처벌로 한정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 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경우

-----<u>온라인</u>소액증 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한 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제공하는 경

-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2. 투자<u>광고가 게시된 인터넷</u>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 | 3. 발행하려는 증권의 종류 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 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 · 정보 등의 검색 과 전자우편 ·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매체를 이용하 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 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 종

4. 증권발행의 일반적인 조건 5. 증권발행의 예상 일정

6.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신 설>

<신 설>

<u>②</u>·<u>③</u> (생 략)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

 홈페이지
 주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 7.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들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설명회 의 장소, 참관인 등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 최할 수 있다.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117</u> 조의7제11항제3호
<u>제117</u> 조의7제11항제3호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 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 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 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 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 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생략)

-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 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⑥</u>
1
가. (현행과 같음)

-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생략)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⑧ (생 략)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 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 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 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 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 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나
4천만원
2
_
가. (현행과 같음)
나
2천만원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9제1항ㆍ제2항에 따
른 투자광고(투자광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제117조의10제2항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 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2)제117조의7제10항-----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 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 11. (현행과 같음) 1. ~ 11. (생 략) 11의2. <u>제117조의7제7항</u>---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 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 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7제12항을 위 <신 설> 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사

모를 한 자와 그 증권을 온라

<u>11의3.</u> (생 략)

12.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8의3. (생략)

18의4. <u>제117조의7제10항</u>을 위 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 는 행위를 한 자

19. ~ 48. (생략)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삭 제 3. ~ 19의4. (생 략) <신 설>
 - 19의5. <u>제117조의7제4항</u>을 위반 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 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

인소액투자중개한 자
<u>11의4.</u> (현행 제11호의3과 같음)
12.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1. ~ 18의3. (현행과 같음)
18의4. <u>제117조의7제11항</u>
19.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u>.</u>
3. ~ 19의4. (현행과 같음)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u>한 자</u>
 19의6. 제117조의7제5항
19의7. 제117조의7제8항

거나 차별한 자 19의8. 제117조의9제3항-----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 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생략) 19의9. (현행 제19호의8과 같음) 20. ~ 63. (생략) 20.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1. ~ 12. 삭 제 13. ~ 35의2. (생 략) 13. ~ 35의2. (현행과 같음)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 35의3. 제117조의7제10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 자 35의4. ~ 49. (생 략) 35의4. ~ 4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2. ~ 6의2. (생략) 2.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6의3. 제117조의7제9항-----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통지한 자

6의4. ~ 1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6의4. ~ 19. (생략)

④ (생략)